

등록회원에 관한 규정

제정	1992. 2. 1.
전문개정	2012.11.27.
개정	2014.12.23.
개정	2017. 7.25.
개정	2017.10.27.
개정	2018. 6.26.
개정	2019. 4.23.
전부개정	2020. 2. 3.
개정	2021. 1.27.
개정	2024. 3.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간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 제11조제3항에 따른 회원의 등록과 회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7., 2024. 3.26.)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협회의 회원과 회비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4. 3.26.)

제3조(용어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등록회원: 일반회원과 평생회원인 자
2. 일반회원: 협회 및 지부가 정한 당해 연도 회비를 납부한 자
3. 평생회원: 협회가 정한 평생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비납부의 의무를 다한 자로서 협회 및 지부가 정한 회비 외의 부담금에 대해 납부한 자(개정 2024. 3.26.)
4. 일반회비: 협회 및 지부가 정하는 당해연도 회비
5. 평생회비: 협회비의 25배에 지부비의 25배를 합한 금액
6. 협회비: 일반회비 중 협회회비
7. 지부비: 일반회비 중 지부회비
8. 온라인회원등록시스템: 회원 등록의 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작성·제출·송달하거나 관리하는 데에 이용되는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신설 2021. 1.27.)

제4조(등록) ① 회원이 등록하여야 할 지부는 다음과 같다.

1. 취업 중인 자: 근무처가 소속된 지역의 지부
 2. 미취업 중인 자: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지가 속한 지부
- ② 일반회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일반회비와 함께 소속 지부 또는 협회 온라인회원등록시스템을 통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7., 2024. 3.26.)

- ③ 평생회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와 증명사진 1매를 평생회비와 함께 소속 지부 또는 협회 온라인회원등록시스템을 통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7.)
- ④ 해외에 거주하는 자로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구비서류와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을 갖추어 협회에 신청한다.(개정 2024. 3.26.)

제5조(평생회비의 관리) ① 평생회비 중 협회비의 25배는 협회가 관리하며 지부비의 25배는 각 지부가 관리한다.

- ② 협회 및 각 지부는 평생회비 중에서 평생회원 가입 연도의 협회비 및 지부비(전년도 회비로 산정)를 제외한 원금을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은행에 예치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각각 협회비 및 해당지부의 지부비로 한다. 다만, 협회 또는 각 지부는 총회의 결의로 평생회비를 별도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부가 총회의 결의로 평생회비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 경우는 1992. 1. 1. 이후 가입된 평생회원의 평생회비에 한 한다.
- ④ 각 지부는 평생회원의 등록을 받은 경우 협회비에 해당되는 평생회비는 바로 협회로 진출시켜야 한다.
- ⑤ 1992. 1. 1. 이후에 평생회원으로 등록한 자가 지부를 이동할 경우에 그 해당 지부는 평생회원 가입 당시의 지부비에 해당되는 평생회비를 이동할 지부로 진출시켜야 한다.

제6조(평생회원의 관리) ① 평생회원 중 국내거주자는 각 소속지부가 관리하며 해외거주자는 협회가 관리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992. 1. 1. 이후 등록한 평생회원이 해외에 거주 중인 경우와 사망한 경우의 평생회비는 제6조제1항에 따라 각 소속 지부의 평생회비 기금으로 한다.(개정 2024. 3.26.)

제7조(평생회원의 수) 각 지부의 평생회원 수는 매 회계연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부가 협회에 보고한 평생회원의 지부이동현황을 계산하여 산출한 수로 한다.

제8조(일반회비 면제 및 감액대상의 범위와 제출서류) ① 회비 면제 대상의 범위 및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당해 연도에 소속 지부 또는 협회 온라인회원등록시스템을 통해 신청한다.(개정 2021. 1.27.,2024. 3.26.)

1. 일반사병으로 군 복무 중인 자: 병적증명서
 2. 등록 연도 기준 만 65세 이상 간호사로서 등록회원 기간이 25년 이상인 자: 면허증 사본
(개정 2024. 3.26.)
- ② 회비 감액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소속 지부 또는 협회 온라인회원등록시스템을 통해 신청한다.(개정 2024. 3.26.)
1. 등록 직전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비활동(미취업 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휴직자 제외):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개정 2024. 3.26.)
 2. 제1항제1호의 자로서 등록 직전 회계연도에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병적증명서(개

정 2024. 3.26.)

3. 제1항제2호의 자로서 등록 직전 회계연도에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면허증 사본(신설 2021. 1.27., 개정 2024. 3.26.)

제9조(일반회비 면제 및 감액 내역) ① 제8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 일반사병으로 군 복무하는 기간은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본문의 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공백 기간 중 비활동(미취업 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 회비가 면제된다.(개정 2021. 1.27., 2024. 3.26.)

② 제8조제1항제2호의 경우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회비가 면제된다. 다만, 면제기간동안 회원의 자격은 유지된다.(신설 2021. 1.27., 개정 2024. 3.26.)

③ 제8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에 일반사병으로 군 복무한 기간은 등록 직전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본문의 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입영 전 또는 전역 후 비활동(미취업 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 회비가 감액된다.(신설 2021. 1.27., 개정 2024. 3.26.)

④ 제8조제2항인 경우 등록 직전 회계연도에 대한 회비가 감액된다.(개정 2021. 1.27.)

제10조(등록회원의 정보관리)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회원에 대한 정보는 지부를 통하여 협회에 구축된 온라인회원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이를 통해 관리한다.(개정 2024. 3.26.)

제11조(회원증) ① 일반회원증은 협회 홈페이지 ‘회원확인서’ 출력물로 대신하며, 평생회원증은 협회가 발급한다.

② 평생회원증을 분실한 경우 협회에 재발급 신청을 하되 신청 시 증명사진 1매를 제출하도록 한다.(개정 2024. 3.26.)

제12조(회원번호 부여) 일반회원의 회원번호는 지부별로 부여하며, 평생회원의 회원번호는 협회가 부여한다.

제13조(등록회원의 지부 이동) ① 등록회원은 근무처나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 등록된 지부 또는 이동할 지부 중 한 곳에 서면 또는 구두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등록회원이 지부 이동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제4조제1항에 준하여 소속 지부가 변경된다.(개정 2024. 3.26.)

③ 등록회원으로부터 지부 이동신고를 받은 지부는 바로 신고사항을 해당지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등록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비와 회원의 자격) ① 일반회비가 미납된 기간은 회원의 권리가 제한된다.(조항제목 개정 2021. 1.27.)

② 당해 연도 일반회비와 등록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비 납부 시 회원 등록 기간에는 포함시키되, 납부한 시점부터 등록회원의 자격이 있다.(개정 2021. 1.27.)

제15조(회원 자격전환) ① 회원이 평생회비 완납 후 2주 이내에 일반회원으로의 자격전환을 요청한 경우 또는 지부를 통한 평생회비 분납 중에 일반회원으로의 자격전환을 요청한 경우, 협회는 그 회원을 일반회원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7.)

② 전항의 경우, 자격전환을 요청한 회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까지의 일반회비에 해당하는 회비 전액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한다.

제16조(회원기본사항 변경신고)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부 및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성명
2. 전화번호 및 휴대폰번호
3. 전자우편주소
4. 근무처
5. 주소 또는 국내 거주지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등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 1.27.]

제17조(시행지침)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회장이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1. 1.27.] (개정 2024. 3.26.)

부칙(2020. 2. 3.)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1.2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3.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비 면제 및 감액 대상 회원에 대하여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회비 면제 및 감액 대상 회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전의 일반회비 면제 및 감액대상 회원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3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20 년도 대한간호협회 회원신고서

지부명 : * 항목은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면허번호		*취득 연월일		*회원구분		□ 일반 □ 평생		*신·구 여부		□ 신 □ 구	
*성명	한 글			회원번호		* 기재하지 마세요		*회비 면제자		□ 일반사병으로 군복무중인 자	
	영 문			*입회 연도				* 해당자만 표기		□ 만 65세 이상인 간호사 (단, 회원등록기간이 25년 이상인 자)	
*생년월일				*성 별		□ 남 □ 여		*국 적			
*자택전화				*자택주소		(우 -)					
*휴대폰 번호				*E-Mail							
*학 력	*면허취득 시 학력	□ 전문대학 □ 대학 □ 기타		*학교명				*졸업 연/월		/	
	최종 학위	□ 전문학사 □ 학사 □ 석사 □ 박사								/	
*근 무 처	*취업여부	□ 취업 □ 미취업 □ 정년퇴직		*취업희망여부		□ 유(희망분야:) □ 무					
	*기 관 명			*근무부서				*직 위			
	*전 화			*근무형태		□ 정규직 □ 비정규직(□ 시간제 □ 계약직(임시직) □ 축탁직 □ 기타:)					
	*주 소	(우)						*입사 연도		년	
*가입 산하단체		□ 보건 □ 보협심사		□ 병원 □ 산업		□ 마취 □ 가정		□ 보건진료소장 □ 정신		□ 보건교사 □ 노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에 서명하셔야 회원등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대한간호협회 귀중

대한간호협회(이하 '협회'라 함)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소중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회원에 대한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및 제공하고 있습니다.

※ 협회의 개인정보처리방침, 안정성 확보조치,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등의 상세 내용은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www.koreanursing.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협회는 회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직업윤리를 준수하며, 회원의 권익옹호와 국민건강 및 사회복지 증진과 국제교류를 통한 국가 간호사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협회 목적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다음 각 호의 목적 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①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② 간호윤리 및 저작권 관리에 관한 사업 ③ 보건의료제도의 조사연구 및 간호업무와 개선에 관한 사업 ④ 간호학 연구 및 학술발전에 관한 사업 ⑤ 간호교육 발전 및 교육제도 개선에 관한 사업 ⑥ 간호사 보수교육에 관한 사업 ⑦ 간호사의 권익옹호와 복지 및 취업알선에 관한 사업 ⑧ 기관지(회지, 신문) 및 간호학 관계서적 발간에 관한 사업 ⑨ 대한간호협회(KNA) 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업 ⑩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지원에 관한 사업 ⑪ 간호사업에 대한 관계 부처와의 협의 및 건의에 관한 사업 ⑫ 간호업무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업 ⑬ 제 단체와의 상호협조 및 교류에 관한 사업 ⑭ 기타 협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부동산 임대 등 필요한 수익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⑮ 간호사 국가시험 및 면허·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필수: 회원의 성명, 간호사 면허번호, 취득 연월일, 회원구분, 신·구 여부, 생년월일, 성별, 입회 연도, 우편물 수령 동의함 □
 지 주소 및 전화번호(직장 또는 자택),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근무처 동의하지 않음 □
 선택: 학력(전문학사, 학사, 대학원), 가입 산하단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면허유지 기간일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활용됩니다.

※ 협회는 의료법 제28조에 의거, 당연 가입되는 의료인 단체로서 기본 회원관리를 위해 개인정보가 반드시 수집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동의하셔야 하며, 동의가 없을 경우 회원등록이 불가능하거나 회원으로서 권리행사가 일부 제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공유 및 제3자 제공

협회는 귀하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용범위를 넘어 귀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의하여 귀하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귀하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①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정부 및 관련 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회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회원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지부명 : 회원명 : 서명 또는 날인

- * 본 신고서에 의해 회원명부가 작성되므로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개인정보 변경 시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www.koreanursing.or.kr) 접속 후 '로그인>화면상단 정보수정'에서도 반드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간호사는 의료법 제30조에 의거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보수교육 미이수 시 면허신고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면허신고 미신고시 신고기한이 종료하는 시점부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 * 회비면제자는 회비면제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회비면제가 됩니다.
- * 회비를 납부하여 회원번호가 부여된 이후 회원등록 취소 및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 * 평생회비 완납 후 2주 이내이거나, 평생회비 분납 중에 일반회원으로의 자격전환은 가능합니다.

※ 신규 평생회원
사진 부착